

#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모집 공고

2025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5. 3. 10.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## 1. 사업 개요

- (사업명)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
- (사업목적)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용 완속충전시설 구축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
- (사업예산) 2,217억원(신규 설치\*: 1,917억원, 교체\*\*: 300억원)
  - \*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
  - \*\* 설치 후 5년 경과한 완속충전기를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(7kw)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.
- (신청기간) 2025. 3.10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- (신청방법) 신청자가 하는 직접신청과 사업수행기관이 하는 대행신청 방법이 있으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 포털에서 신청
- (지원제품) 사업수행기관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\* 등록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
  - \* 무공해차 통합누리집→ 구매 및 지원→ 완속충전기 제품안내

## 2. 보조금 지원대상

- 공동주택, 사업장,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·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
- ※ 공용충전시설이란 사용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

### 3. 보조금 지원기준

#### ○ (지원수량) 2025년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기준

구 분	설치가능 수량
1) 해당 장소에 기 설치된 충전기가 없는 경우	주차면수 × 5%
2) 해당 장소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 설치된 충전기가 있는 경우	설치가능 수량 - 기 설치된 충전기 수

※ 설치가능 수량은 계산 후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처리

※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완속충전기를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교체할 경우는 기 설치 수량에서 제외

※ 기 설치된 급속충전기, 완속충전기는 1기로 산정하고, 키오스크 충전기는 2기당 1기, 전력 분배형 충전기는 충전 케이블 수량과 무관하게 1기, 과금형콘센트는 4기당 1기로 산정한다. 단, 기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자가 소유자 또는 특정 차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충전기는 기 설치 수량에서 제외

※ 소상공인의 영업용 전기차 화물·택시 충전시설은 수요자 기준 최대 1기까지만 지원 가능

#### ○ (보조금 지원단가)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충전기 설치비용\*의 50% 이내에서만 보조금 지원

- \* ① 설치비용은 충전기 구매비용, 공사비(캐노피, 볼라드, 스톱퍼 등 부대시설 포함), 한전불입금, CCTV(열화상카메라 포함)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
- ② CCTV(열화상카메라 포함)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비추는 전용시설인 경우만 해당하며 화재 감시가 가능해야 함(충전기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)

#### < 2025년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 >

충전기 구분	보조금 최대 지원단가(만원)
① 30kW 이상 충전기	700(1기), 600(2기), 500(3기 이상)
② 11kW 이상 충전기	240(1기), 220(2기~5기), 200(6기 이상)
③ 7kW 이상 충전기	(신규) 220(1기), 200(2기~5기), 180(6기 이상) (교체) 110(1기), 100(2기~5기), 90(6기 이상)
④ 전력분배형 충전기	①~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원씩 추가 지원

- 비고 1)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,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 등이 부담함
- 2)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본체에 추가되는 케이블 1기당 3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하며, 동시에 모든 케이블에서 충전시 합산한 총 용량에 해당하는 충전기 보조금 지원(단, 동시 충전시 최소 충전용량은 3kW를 초과할 것)
- 3) 소상공인이 영업용 전기차(화물, 택시 등) 충전을 위한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~④ 단가의 70%를 지원함(ex: 11kW 112만원, 7kW 98만원)

#### 4. 보조사업 추진절차



## 5. 충전시설 설치신청

### ○ (지원제품)

-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포털 접속 → 상단 메뉴의 [구매 및 지원] 선택 → [완속충전기 제품안내] 선택 후 사업수행기관과 제품 확인
  -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현장 컨설팅 진행 후 신청서 작성·접수
- ※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서 설치신청 및 보조금 지급신청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

### ○ (신청서류)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[별지 제5호 서식] 등

※ 제출서류는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(P.13) 참고

### ○ (신청방법)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포털 →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시스템

## 6. 유의사항

- 「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」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지침에 따라 제재 처분함.
-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되며,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제한받을 수 있음.
-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신청서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되어 승인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충전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하여야 함.
-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되지 않도록 신청자(설치 승낙자)와 사전 현장 컨설팅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.
-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 시 「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」 [별표3, 4]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.
- (문의처)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전기차 보조사업 운영TF(1899-3638)